##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5 발의연월일: 2021. 12. 9.

발 의 자:이양수·김은혜·홍석준

성일종 • 권성동 • 안병길

정운천 · 김성원 · 정진석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어혼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혼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어가소득 지지를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3.1.)으로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조건불리지역의 어선원이나 연륙섬 지역은 지원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어촌사회의 기능유지 및 강화를 위해 어선원과 연륙섬 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촌에 거주하며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선원을 직불금의 지원대상에 포함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연륙된 섬지역의 사회·경제적 불리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륙 된 지 10년 이내의 섬지역에 대해서도 직불제 지원을 확대함(안제6조제1호).

법률 제 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중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2호에"를 "제4조제2호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어업인"을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이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라 한다)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어업인(이하 "어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지역(연륙된 지 10년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람 다만, 어선원의 경우 어가 단위가 아니더라도 어선원이 직접 신청할수 있으며, 같은 세대에서 2인 이상의 어선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시행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육지와 연륙된 지 10년 이내인 도서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
대상) <u>&lt;신 설&gt;</u>	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
	업인(이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라 한다)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
	조제2호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어업인
	(이하 "어선원"이라 한다)으로
	<u>한다.</u>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	② 제4조제2호에
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	
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u>「농어업</u>	<u>어업경</u>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u>영체 등록 어업인</u> .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 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 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 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 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1. 도서지역

### 2. (생략)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 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 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의 시행)
그거 기정)
<u>.</u>
1. 도서지역(연륙된 지 10년 이
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u>내의 지역을 포함한다)</u>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 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 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 다. <단서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
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u>사람</u>
2
<u>다만, 어선원의 경우 어가</u>
단위가 아니더라도 어선원이 직
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세
대에서 2인 이상의 어선원이 중
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